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6. 28.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7. 1.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9.2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5.)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2.1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김선교의원)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범죄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고, 1953년 제정 형법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그러나 가족 및 친족관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존 친족상도례 적용이 국민 상식과 법감정,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음.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됨으로써 시대착오적 법조항이라는 비판이 있음.

또한 최근(24.6.27.)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음.

이에 친족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제36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현행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아예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바, 개정안이 친족상도례의 법적 효과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더라도 법률상 고소 및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여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용민위원)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의 적용 배제규정을 두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